



대기정책 및 관련법령의 이해와 적용사례

1. 대기환경보전법의 이해와 적용사례

연재

3-7. 배출부과금 부과

- ❖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를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
 - 초과부과금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배출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 부과
 - 기본부과금 :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 부과

3-7-1. 제도개요

- 기본부과금은 연료대체, 공정개선, 고효율방지시설의 설치 등으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하고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환경자원의 사용대가 차원에서 부과
- 초과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하여 벌과금적인 성격으로 부과하며, 강제적으로 배출허용기준 준수확보 목적으로 운영

3-7-2. 제도의 연혁

- (1) 1983. 9 : 초과배출부과금 제도 최초시행
 - 부과대상항목(4종) : 먼지, 황산화물, 불소화합물, 악취
- (2) 1991. 1 : 부과대상 오염물질 항목 추가 및 종별 부과금 신설
 - 부과대상항목 : 먼지, 황산화물, 불소화합물, 악취, 암모니아, 황화수소, 이황화탄소, 염화수소, 염소, 시안화수소
- (3) 1997. 1 : 기본부과금 제도도입(부과항목 : 먼지, 황산화물)
- (4) 1999. 10 : 종별부과금 폐지
- (5) 2000. 1 : 기본부과금제도 전 사업장으로 확대
- (6) 2005. 1 : 5종 사업장에 대한 기본부과금 면제
- (7) 2010. 1 : 4종 사업장에 대한 기본부과금 면제

* '10년부터 배출하는 오염물질량에 대하여 기본부과금 면제

3-7-3. 초과부과금

❖ 근거 규정 : 법 제35조제1항제1호, 시행령 제23조
부터 제26조

○ 부과대상 오염물질(9종) :

황산화물, 암모니아, 황화수소, 이황화탄소, 먼지,
불소화합물, 염소, 염화수소, 시안화수소

○ 부과금 산정방법

- 개선명령 없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을
완료한 경우

•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 배출허용기준 초과
오염물질 배출량 × 지역별 부과계수 ×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 개선명령에 따라 개선을 이행한 경우

•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 배출허용기준 초과
오염물질 배출량 × 지역별 부과계수 ×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
계수 ×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 등

- 배출허용기준 초과 오염물질 배출총량 = 일일 기
준초과 배출량 × 배출기간 일수(日數)

- 배출기간 산정

• 개선명령 없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을
완료한 경우 : 명시된 부적정 운영 개시일부터
개선 완료일까지

• 개선명령에 따라 개선을 이행한 경우 :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또는 오염물질
채취일)부터 개선명령·조업정지 명령·사용중지
명령·폐쇄명령의 이행완료일이나 또는 허가
취소일

- 배출기간은 일수로 표시, 일수 계산은 민법을 적용,
초일(初日)을 산입

○ 일일 기준초과 배출량 산정방법(시행령 별표 5 참조)

-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농도 × 일일 유량

○ 부과계수 및 부과금 산정기준

구 분		부과계수 등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시행령 별표 4 참조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	I 지역	2
	II 지역	1
	III 지역	1.5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매년 고시)		'10년 : 5.1197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위반이 없는 경우	100분의 100
	처음 위반한 경우	100분의 105
	2차이상 위반한 경우	위반횟수의 부과계수에 100분의 105를 곱한 것

* I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취락지구,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 II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 37조에 따른 개발진흥지구(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 III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같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른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위반횟수는 사업장의 배출구별로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 이전의 최근 2년의 단위로 산정

3-7-4. 기본부과금

❖ 근거 규정 : 법 제35조제1항제2호, 시행령 제28조
부터 제31조, 시행규칙 제45조

○ 부과대상 오염물질(2종) : 황산화물, 먼지

○ 부과기간 : 매반기별로 부과

반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상반기	매년 6월 30일	1월 1일 부터 6월 30일 까지
하반기	매년 12월 31일	7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 부과기간 중에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자의 부과 기간은 최초 가동일부터 부과기간 종료일까지로 함.

○ 부과금 산정방법 및 기준

-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오염물질 배출량 × 지역별 부과계수
×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 농도별 부과계수

구 분		부과계수 등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초과부과금과 부과금액과 동일
지역별 부과계수	I 지역	1.5
	II 지역	0.5
	III 지역	1.0
농도별 부과계수		시행령 별표 8 참조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최초 부과년도 1을 기준으로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매년 고시)		'10년 기준 : 1.5316

* I 지역, II 지역, III 지역 구분은 초과부과금 기준과 동일

- 기본부과금 부과를 위한 확정배출량 자료 제출
 - 기본부과금의 산정을 위해 기본부과금 부과기간 동안 실제 배출한 기준이내 배출량에 관한 확정배출량 자료를 부과기간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행정기관에서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함)
 - 확정배출량 자료 제출시 첨부할 서류
 1. 확정배출량 명세서(별지 제14호 서식)
 2. 황 함유분석표 사본(황 함유량이 적용되는 배출계수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부과기간 동안의 분석표만 제출)
 3. 연료사용량 또는 생산일지 등 배출계수별 단위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배출계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출)
 4. 조업일지 등 조업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자가측정 결과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출)
 5. 배출구별 자가측정한 기록 사본(자가측정 결과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출)

< 배출량 산정방법 >

- 1) 확정배출량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음

$$\text{확정배출량} = \text{일일평균배출량} \times \text{부과기간의 조업일수}$$
-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일평균배출량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음
 - 가) 자가측정결과에 따라 산정할 때

$$\frac{\text{일일배출량의 합계}}{\text{자가측정횟수}}$$
 - 나) 당해 부과기간 내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검사결과가 배출허용기준 이내일 때

$$\frac{\text{가목의 규정에 의한 일일평균배출량} + \text{통보받은 오염물질 배출량의 합계}}{1 + \text{검사횟수}}$$
- 3) 당해 부과기간 내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검사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확정배출량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음

$$\text{제1호에 의한 확정배출량} + [(\text{배출허용기준농도} - \text{일일평균배출농도}) \times \text{배출기간} \times \text{검사결과 통보된 측정유량}]$$

< 비 고 >

1. 확정배출량 및 일일평균배출량은 킬로그램 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2. 제2호 가목에 의한 일일배출량은 당해부과기간 동안 배출구별로 정하여진 자가측정횟수에 따라 측정된 자가 측정농도에 측정당시의 일일유량을 곱하여 산정하며, 일일유량의 산정에 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제3호에 의한 확정배출량 산정시 동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초과배출량은 제외한다.
4. 제3호에 의한 일일평균배출농도는 부과기간동안 측정된 자가측정농도를 합산하여 이를 자가측정횟수로 나눈 값으로 한다. 다만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사업자가 산정한 일일평균 배출농도와 통보받은 오염물질배출농도를 합산한 후 검사횟수에 1을 더한 값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5. 제3호에 의한 배출기간은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6. 제3호에 의한 배출기간 산정시 배출기간의 종료일이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제출기간의 종료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확정배출량에 관한자료제출일 까지를 배출기간으로 한다.

3-7-5. 배출부과금 조정 및 징수유예, 분할납부

❖ 특별한 사유 발생시에는 배출부과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거나, 이미 납부가 완료된 경우에는 차액을 부과·환급하고,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를 할 수 있음

❖ 근거 규정 : 시행령 제34조부터 제36조, 시행규칙 제50조

○ 배출부과금 조정

- 배출부과금을 조정할 수 있는 요건

1. 개선기간 만료일 또는 명령이행 완료예정일까지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등을 이행하였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초과부과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오염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진 경우
2. 초과부과금의 부과 후 오염물질을 다시 측정한 결과,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량이 처음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3. 사업자가 과실로 확정배출량을 잘못 산정하여 제출하였거나 환경부장관이 조정한 기준이내 배출량이 잘못 조정된 경우

- 배출부과금 조정 신청 :

부과금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조정 신청

○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를 할 수 있는 요건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위의 준하는 사유로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부과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기본부과금의 경우)

- 징수유예 기간 및 분할납부 횟수

1. 초과부과금 :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6회 이내로 분할납부

* '11년 6월 30일까지는 2년 이내, 12회 이내 분할 납부 가능 (한시적 유예)

2. 기본부과금 :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다음 부과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4회 이내로 분할납부

* 부과금이 납부의무자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을 2배 이상 초과할 때에는 유예기간이나 분할납부 횟수 연장 가능

자료제공 : 환경보전협회 환경연수처
다음호에 계속 ...

